

<p>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</p> <p>4. 기타 품위손상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</p> <p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설시설계심의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전에 이미 기본설계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심의를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조를 삭제한다.</p> <p>제5조중 “본부와 하부기관에”를 “본부에”로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재사업소장이 행한 행정처분·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건설자재사업소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종합건설본부장의 행위 또는 종합건설본부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.</p> <p>③(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건설자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합건설본부를, 건설자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합건설본부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	<p>①본부장 밑에 청소연구소 및 난지도관리사업소를 둔다.</p> <p>제4조제2항중 “난지도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위생처리사업소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하며,”를 “난지도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하며,”로 한다.</p> <p>(별표)를 별지와 같이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처리사업소장이 행한 행정처분·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위생처리사업소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청소사업본부장의 행위 또는 청소사업본부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.</p> <p>③(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위생처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사업본부를, 위생처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사업본부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(다음 페이지에 계속)</p>
--	---

(별 표)

기 구 표

